

# 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Ⅲ)

글/김 기 욱(대한전기기사협회 기술실장)

##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토록 하지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포, 협조요청, 보고·출석의 의무, 법령 요지의 게시와 안전표지의 부착 등을 의무화 하였다.

#### (1) 정부의 책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며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타 단체, 연구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나)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가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의 작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 운동에 관한 사항

(마)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안전·보건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2)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또한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

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축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도록 되어있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된다.

**(4)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등 14개 부처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있다.

**(5)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공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다.

**(6) 협조요청 등**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7) 법령요지와 안전표식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 대표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야 한다.

(가) 안전관리규정작성·신고에 관한 사항

(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자체검사대상과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주의 자체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식을 부착하도록 한다.

여기서 법령요지 게시나 안전표식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는 다음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나) 안전관리규정작성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라)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보건관리

(바)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사) 산업재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아)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상기내용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노동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2) 관리감독자 등**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은 사업장내의 지휘, 감독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전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또한 안전관리자의 조언에 대한 협조 등이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3) 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업무와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해야 한다.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전압이 75볼트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이외의 작업은 생략한다.

**(4) 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였으며 두지 않았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 (나)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된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다) 당해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수립 및 실시

<표 1> 사업의 종류에 따른 규모 및 선임방법

사업의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건설업 제외한사업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4	산업안전기사 1급·2급, 건설안전기사 1급·2급,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한 자.
	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2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감독자로서의 업무에 1년 이상 담당할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합격한 자
	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체외)	1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에 선임될 수 있다).
건설업	공사금액 300억 이상 또는 근로자 300인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하고 감독자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합격한 자(200인 미만에 선임)
	공사금액 10억~300억원 미만	1	이상의 자(200인 미만에 선임)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 (라)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마)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업무를의 위탁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2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한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표 2>과 같이 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법령해설①

<표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

구분	시설	인력 기준	장비	대상업종
1. 본부	1) 사무실 66㎡ 이상 2) 장비실 33㎡ 이상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안전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실무경력 7년 이상 인자 1인 이상 나. 산업안전기사 2급으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 7년 이상 인자 1인 이상 다. 기계·화공 또는 전기분야 기사 2급 이상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마. 산업안전·기계·화공 또는 전기분야 기사 2급 이상인 자 2인 이상	1. 회전속도 측정기 2. 비파괴검사기 3. 표준안도계 4. 표준압력계 5. 소음측정기 6. 수준기 7. 가스농도 측정기 8. 산소농도 측정기 9. 가연성가스검지관 10. 절연저항 측정기 11.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2. 제전기시험기 13. 만능회로 측정기 14. 진동측정기 15. 접지저항 측정기 16. 절연유내 암시험기 17. 검전기(저고·특저압용)	모든 사업(건설업을 제외한다)

구분	시설	인력 기준	장비	대상업종
2. 지부 (특별시·광역시 및 도 단위)	1) 사무실 33㎡ 이상 2) 장비실 17㎡ 이상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안전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 산업안전기사 2급으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 산업안전·기계·화공 또는 전기분야 기사 2급 이상인 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2. 대행사업장 또는 근로자수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원		본부의 경우와 동일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50인 이상 사용하는 건설업, 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중 선박건조 및 수선업, 토사석채취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로 산업재해발생의 급

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의 중지 또는 재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등이다.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안전관리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법에 의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8)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조칙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이다.

노동부장관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않은 자와 변경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주와 근로자는 준수하여야 한다.

**다. 유해·위험예방조치**

**(1)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해체·증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으로 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재해원인조사, 안전보건진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필요한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수 있고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4) 유해작업 도급금지**

안전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도급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의 채련·주임·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5)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6) 안전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사업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해설①**

이 교육은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은 안전에 관한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7)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조·수입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 보호구의 검정**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방독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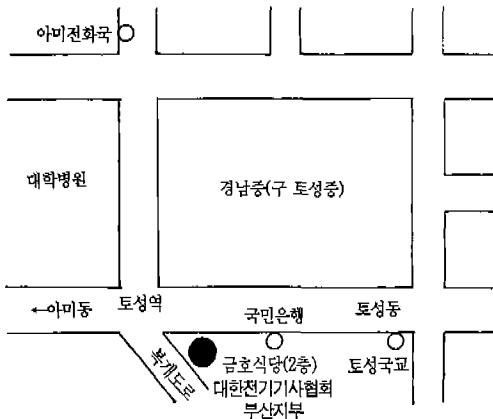
**(9) 자체검사**

사업주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보일러 및 압력용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존하도록 되어있다.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다음에 계속>

**지부사무실 이전안내**

**◎부산지부**

- 이전일자 : 1992년 6월 9일(화)
- 이전주소 : 부산시 서구 토성동 3가 13  
(국민은행 토성동지점 서쪽)
- 전화번호 : 종전과 같음
- 이전약도 :



**◎제주지부**

- 이전일자 : 1992년 5월 30일(일)
- 이전주소 : 제주시 이도2동 1173-1  
(명복빌딩 3층)
- 전화번호 : 종전과 같음
- 이전약도 :

